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전문위원 장 용 대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, 업무이관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,
- 신규위임 대상사무 신설,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권한위임 사무 신설 : 3건
 - －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관한사항(지정 등) : 2건(환경정책과)
 - － 북부출장소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소내 전보권 : 1건(총무과)

- 근거법령 전부(일부)개정에 따른 권한사항 변경(삭제) : 7건
 - 보안림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(1건) : 시도 → 시군
 - 마약관련 업무(4건) : 시도 → 시군, 시도→식약청
 - 의약품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(1건) : 시도 → 식약청
 - 당직의료기관의 지정(1건) : 시도 → 보건복지부, 시도, 시군구

-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조정, 부서명칭 변경 등 : 74건
 - 위임기관 추가 : 북부출장소
 - 사업소 명칭변경 : 종자사업소 → 농산사업소
 - 부서명칭 변경 : 8건
 - 소관부서 조정 : 64건
 - 미래산업과 →생활경제과(18건) : 에너지, 액화석유가스 관련 업무
 - 미래산업과 → 치수방재과(4건) : 승강기 관련업무
 - 보건정책과 → 식품의약품안전과(20건) : 한약사업, 마약 관련 업무
 - 지역개발과 → 균형개발과(21건) : 도시계획시설, 도시개발사업 관련업무
 - 도로과 → 균형개발과(1건) :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

-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등 변경 : 26건
 - 권한위임 범위 확대를 위한 자구 변경 1건(환경정책과)

- 비산면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사항
 - 당초 :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안의 사업장 등 제외
 - 변경 : 당초 단서조항 삭제
- 관련법령 제정 시행에 따른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: 7건 (산림녹지과)
 - 보안림에 관한 사무 →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사무 (3건)
 -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에 관한 사무 → 보호수 등에 관한 사무(3건)
 - 산림병해충의 구제·예방에 대한 조치명령 →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에 필요한 명령(1건)
- ※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→ 산림보호법
- 기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: 18건
 - 관계법령 개정 : 농산지원과 7건, 보건정책과 2건, 식품의약품안전과 3건
 - 자구수정 : 식품의약품안전과 6건

4. 검토의견

가. 개정취지

이번에 제출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, 업무이관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, 신규위임 대상사무의 신설,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

동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
주요 내용으로는

권한위임 대상사무 신설 3건,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권한사항 변경 및 삭제 7건,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조정, 부서명칭 변경 등 74건,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등 정비 26건 등 총 110건의 업무를 조정·변경하는 것임.

이번 개정조례안은 권한위임 대상사무 신설,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및 부서명칭 변경,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권한사항 변경,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